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金炳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958

발의연월일: 2020. 9. 16.

발 의 자: 金炳旭・김은혜・윤두현

김영식 · 이 용 · 정희용

송언석 · 이채익 · 임이자

이주환 · 이종배 · 장제원

구자근・김기현・유경준

황보승희 · 백종헌 · 김성원

강대식 · 이헌승 · 전봉민

김예지 · 김승수 · 배준영

이양수 · 이만희 의원

(26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의 고지정보를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집·학교의 장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일반 국민이 성범죄자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송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고지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로도 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1조제4항 각 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1조제4항 중 "우편으로"를 "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으로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우편으로"를 "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제4항 각호의 방법으로"로, "따른 고지정보를 우편으로"를 "따른 고지정보를 제4항 각호의 망법으로"로, "따른 고지정보를 우편으로"를 "따른 고지정보를 제4항 각호의 모든 방법으로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우편송부및"을 "우편송부·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및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"우편송부 및"을 "우편송부·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및"으로한다.

- 1. 우편으로 송부
- 2.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)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이 고지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1조(고지명령의 집행) ① ~	제51조(고지명령의 집행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	4
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	
역에 거주하는 아동·청소년의	
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	
는 가구, 「영유아보육법」에	
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「유	
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의	
장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	
에 따른 학교의 장, 읍·면사무	
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,	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	
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에	
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	
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	
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	
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	
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	
의 장에게 <u>우편으로</u> 송부하고,	<u>다음 각 호의 모든</u>
읍·면 사무소 또는 동(경계를	<u>방법으로</u>
같이 하는 읍·면 또는 동을 포	
함한다) 주민자치센터 게시판	

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.

<u><신</u> 설> <신 설>

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 할구역에 출생신고·입양신고·전 입신고가 된 아동·청소년의 친 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및 관할구역에 설립·설치 된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유아교육 법」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 른 학교의 장, 「학원의 설립・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 과교습학원의 장과 「아동복지 법」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으로서 고 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우편으 로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

1. 우편으로 송부
2.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
이용한 송부
⑤
<u></u>
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제4항
각 호의 방법으로
<u>따른 고지정보</u>

를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

-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항및 제5항에 따른 <u>우편송부 및</u>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·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⑦ 제6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읍·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 민자치센터의 장은 <u>우편송부</u>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.

⑧・⑨ (생략)

를 제4항 각 호의 모든 방법으
<u>로</u>
6
<u>우편송부·</u>
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및-
⑦
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및-
8·9 (현행과 같음)